

제327회 시의회 정례회

환경수자원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의 견 서

(이용균 의원)

2024. 12.

정원도시국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  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  
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 
의안번호 제2161호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 
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,  
일정 범위의 상행위를 허용하여  
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 
우리 국 검토의견은 ‘원안동의’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